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연월일	2022. 6. .
제안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22. 6.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2022. 1. 13. 字 시행)전부개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올바른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시민에게 보다 적법하고 알기 쉬운 조례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불부합 규정 개정(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9조)
- 올바른 띄어쓰기 반영 등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49조제5항, 제117조제2항, 제126조~제129조, 제131조~제134조, 제163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본 회의”를 “본회의”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휴회중일”을 “휴회 중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법 제117조 및 제120조”를 “법 제131조 및 제13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본회의감사”를 “본회의, 감사”로, “증언,의견”을 “증언·의견”으로 하고, “현지확인”을 “현지 확인”으로, 같은 항 후단 중 “증언등”을 “증언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1조제5항”을 “법 제49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1일전까지”를 “1일 전까지”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하며,선서하기”를 “하며, 선서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며,증인이 선서서를”을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로 한다.

제9조의3 제목 “증인의 보호및 실비보상”을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으

로 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증언.진술”을 “증언·진술”으로, “증인.참고인”을 “증인·참고인”으로, “방송.보도”를 “방송·보도”로 한다.

제9조의3제2항 중 “증언.진술하기”를 “증언·진술하기”으로, “지급한다. 다만,소속기관에서”를 “지급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으로,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의”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의”으로, “있을때”를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할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받아감사”를 “받아 감사”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하게할”을 “하게 할”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제16조 중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9조”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운영등”을 “운영 등”으로,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와 구미시의회회의규칙”을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46조</u>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같은 법 시행령 제53조</u> ----- ----- ----- ----- ----- ----- -----.
제2조(감사) ①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u>본 회의의</u>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2조(감사) ① ----- ----- ----- ----- <u>본회의</u>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조사) ① ~ ③ (생략)	제3조(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의회가 폐회 또는 <u>휴회중일</u>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u>휴회 중일</u> ----- ----- ----- -----.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

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의 사무 및 경상북도의 사무 중 국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무) ①----- 법 제13조-----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현지 확인-----

증언·의견-----

---. -----현지 확인-----

----- 증언 등-----

② (현행과 같음)

③ -----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
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서류제출을 요구받
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
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
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 제41
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다.

제9조의2(증인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
할 때에는 [별표]의 선서서에
의하여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
음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기립하여 엄
숙하게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 1일 전 -----
-----.

④ -----

----- 법 제49
조제5항 -----

-----.

제9조의2(증인선서) ①-----

----- 하며,
선서하기 -----

-----.

②-----
-----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직원
이 이를 대행한다.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
상)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
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
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참고인은 그 회의
가 개회되기 전까지 그 이유서
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진술하기 위하여 의회 또
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국내여비지급
규정 등을 적용하여 여비 등 실
비를 지급한다.다만,소속기관에
서 따로 여비 등 실비를 지급받
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
부투자기관,지방공사의 임직원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
상) ①-----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

-----방송·
보도-----

----- . --- 증인·참고인

은-----

-----.

②-----
증언·진술하기-----

--- 지급한다. 다만, 소속기관-

-----정
부투자기관, 지방공사의-----

또는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다
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
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감사 또
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
고) ①·② (생 략)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
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
를 하게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
한 처리) <신 설>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있을 때에는 -----
-----.

할 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 받아 감사 --
-----.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
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하게 할 ----.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
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u>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u> <u>감사 또는 조사결과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u>	<u>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u>
② (생 략)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u>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9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u> 징계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6조(징계) ----- ----- ----- ----- ----- ----- <u>경우에는 「지방자치법」</u> <u>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u> --- -----.
제17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u>운영등에</u>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u>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와 구미시의회회의규칙을</u> 준용한다.	제17조(준용규정) ----- ----- <u>운영 등</u> ----- ----- --- <u>「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u>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 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 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4조(하부 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